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21794호) 개정 · 공포 알림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4호)이 2026. 6. 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아울러, 개정법률은 2026. 6. 9.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94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본부(61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6개 전부서), 6개 지방청(54개 전부서),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



주무관	손익재	연구관	홍정미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 6. 9.
				과장	최종동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6494 (2026. 6. 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4 팩스번호 043-719-2000 / sij0301@korea.kr / 대한민국 공개